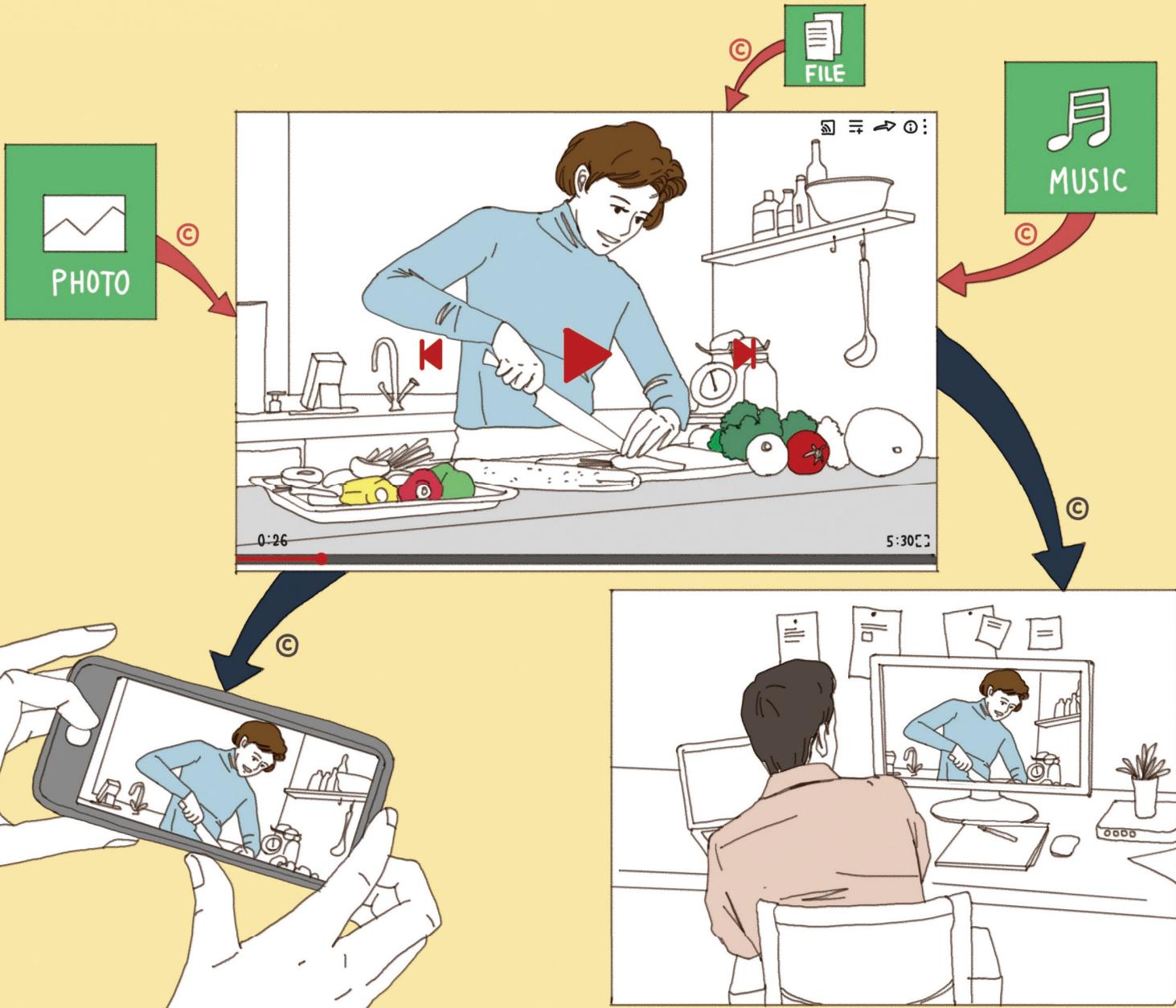


# 저작권 올한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유명 캐릭터의 포즈를 패러디해 제작한 아트굿즈, 저작권 침해일까?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 그 시각적 표현에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캐릭터 자체도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캐릭터가 취한 포즈나 그림의 구도를 패러디한 경우는 어떨까?



### Q

아트굿즈를 만들었는데 제품에 그려진 그림의 구도가 유명 히어로 캐릭터들의 그림과 유사하다고 저작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림의 구도와 그림 속 캐릭터의 포즈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일까?

### 패러디의 범위와 저작물의 보호

### A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했던 ‘코리아 어벤져스 프로젝트’의 일러스트가 저작권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김구 선생을 필두로 안중근, 유관순 등 독립운동의 영웅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자세를 잡은 일러스트를 티셔츠와 핸드폰 케이스에 프린트해서 상품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코리아 어벤져스 일러스트 작품이 마블 코믹스가 2007년 출판한 코믹스 ‘어벤져스: 더 이니시에이티브(Avengers: The Initiative)’의 표지 그림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의 인물을 중심으로 삼각형 대형으로 영웅들이 자리한 배치나 일부 캐릭터의 자세가 ‘코리아 어벤져스 프로젝트’에 사용된 독립 영웅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작가는 “역사 속의 실제 영웅을 표현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어벤져스’의 느낌을 내기 위해 해당 작품을 패러디”한 것이며 “마블의 캐릭터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 구도와 배치를 참조한 패러디”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코리아 어벤져스 일러스트가 마블 코믹스 표지 그림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코리아 어벤져스 일러스트를 보면 마블 코믹스를 떠올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서 쟁점은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의 면책사유가 되는지와 캐릭터들의 구도와 배치를 참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일 것이다. 패러디에 대한 정의나 범위는 논자마다 다르지만, 일종 코믹한 효과나 조롱을 위해 원작의 저자나 작품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모방한 문학 또는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작 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수용자에게는 원작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패러디스트가 의도하는 메시지와 함께 풍자와 웃음, 사회적·인간적 교훈 등을 전하기도 한다. 패러디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의 한 형태로 발전되어 온 이론이고, 몇 개의 국가에서는 입법적으로 패러디를 저작권의 자유 이용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러디의 법적 취급에 관해서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저작권법

미국의 경우 저작물 공정이용의 한 형태로 패러디에 관한 많은 판례이론이 집적되어 있고, 입법적으로 판례이론을 수용해 놓았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술 또는 연구 등 공정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공정이용의 판단요소로 ①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실질적 가치, ④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공정이용 규정은 한미 FTA 이행입법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거의 그대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공정이용의 요소로 패러디를 판단해보자.

① 요소는 패러디를 만드는 목적의 상업성 여부와 관련한 것인데,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비상업적, 교육적 목적을 가진 것이 더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② 요소는 원작의 성격과 관련한 것인데, 원작이 창작성이 높은 것 일수록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③ 요소는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가와 관련한 것인데, 과도하게 많은 분량을 차용하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원작을 떠올리게 할 정도의 차용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④ 요소는 패러디가 원작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코리아 어벤져스 케이스를 판단해보자.

우선 결리는 부분은 ③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마블 코믹스에서 차용한 부분은 영웅들의 배치, 자세, 구도 등일 것인데, 이

것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인지 문제 된다. 저작권법의 대원칙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견지에서 보면 코리아 어벤져스 프로젝트가 차용한 것은 표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것 같다. ④ 요소를 적용해보면 코리아 어벤져스의 일러스트가 원작 마블 코믹스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차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타 저작물의 창작적 성취를 패러디나 오마주라는 이름으로 차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마주라는 것도 원작자에 대한 차용자의 일방적 짹 사랑일 뿐 원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요한 표현을 차용한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술적 관용과 저작권법적 허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지점에서 그림 표지에 관한 미국 법원의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뉴욕 맨해튼의 4개 블록을 배경으로 묘사한 “뉴요커” 잡지의 표지 그림의 작가가,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허드슨강의 모스크바”라는 영화의 포스터의 배경 그림이 잡지 표지 그림과 너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sup>1</sup> 이 사건에서 놀랍게도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 측의 공정이용(패러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 포스터는 잡지 표지 그림 자체를 풍자한 것이 아니라 뉴요커라는 잡지를 비판하는 데 잡지 표지 그림을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논거가 제시되었다. 물론 두 개 이미지의 유사성이 표현적 유사성에 더 비중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본건과는 약간 차이는 있다. 어찌 되었든 허용되는 패러디의 경계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

<sup>1</sup> Steinberg v.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663 F. Supp. 706 (S.D.N.Y. 1987)